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이주웅의원이 발의하고, 2021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등 서식사항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를 주요골자로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18세이상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등 서식사항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안 제12조에서는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 조례안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